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16 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서일준

이용호 · 이철규 · 임병헌

정점식 · 정희용 · 조명희

최형두 • 황보승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은 1962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・예술적・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.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.

그러나, 이제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,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, 문화유산 · 자연유산 ·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

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,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산기본법안」(의안번 호 제17521호), 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5호)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4호), 「무 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 1호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0호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518호), 「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2호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3호), 「세계유산의 보존・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7호),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| (의안번호 제17513호), 「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2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문화재와"를 "국가유산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국전통문	제1조(목적)
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	
의 창조적 계승·발전과 <u>문화재</u>	<u>국가유</u>
의 보존・관리 및 활용에 관한	<u>산</u>
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	
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, 이	
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	
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.
제14조(전통문화교육원) ① 전통	제14조(전통문화교육원) ①
문화 및 <u>문화재</u> 관련 분야 종사	<u>국가유산</u>
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	
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	
교육원을 둔다.	
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	2
및 <u>문화재와</u> 관련된 분야에 종	<u>국가유산과</u>
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	
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	
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	
정을 둔다.	
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	③
통문화 및 <u>문화재</u> 에 대한 이해	<u>국가유산</u>
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	
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	

회교육과정을 둔다.	,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